##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6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 강대식 · 고동진 · 주호영

강선영 · 김장겸 · 백종헌

김선교 • 배준영 • 정동만

최은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는 군용물 분실의 죄로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75조는 군용물 등에 관하여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한 때에 그 대상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분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 준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법률 제 호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제74조(군용물 분실)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			
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			
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			
람은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u>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u>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라 처벌한다</u> .		
<u>&lt;신 설&gt;</u>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u> &lt;신 설&gt;</u>	<u>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u>		
	<u>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u>		
	<u> </u>		